

특보

발전노동자

제4호



2014.7.7(월)

- ☐ 민주노조 사수
- ☐ 전력산업공공성 강화
- ☐ 생존권 사수
- ☐ 경영평가 무력화
- ☐ 애고자 원직복직

규약도 조합원도 무시하는 동서노조

2014년 6월 30일, 동서노조와 회사가 2/4분기 노사협의회를 통해 가짜정상화 이행에 상당부분 합의했다. 내용적으로 동서발전 노동자들의 복지가 엄청나게 축소되는 사항들이에도 불구하고 단 두차례 회의 끝에 전격적으로 합의했다. 그리고 동서노조는 이에 대해 ‘단체협약이기도 하고, 단체협약이 아니기도 하다’는 궤변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발전노조는 이번 동서노조의 합의가 규약상의 문구로나마 남아있던 노동조합의 민주성을 완전히 말살한 것으로 규정하며, 핵심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 ‘노사협의회에서 단체교섭 사항에 대해 합의할 수 있는지’에 대해 누구든 일차적인 의문을 가질 것은 당연하다. 이와 관련하여 발전노조가 노무법인에 의뢰해 받은 의견은 아래와 같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협의사항)와 제21조(의결사항)에는 단체교섭 대상사항인 임금 등 근로조건 등을 제외한 인사·경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 또는 합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합의사항은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을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는 것이며,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고용노동부 노사 68130-282, 1994. 10. 15; 고용노동부 협력 68210-224, 2003. 5. 26)

○ 이러한 문제 제기를 회사나 동서노조도 이미 예견했던 듯, 박영주 위원장은 대의원과 조합간부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

.....단협은 조합원총회를 거쳐야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협이 갱신될 경우입니다. 우리의 경우는 단협이 2012. 12. 17에 협약되었습니다. 단협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노사 어느 일방이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전에 교섭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합의한 단협 사항들은 단협개정으로는 처리할 수 없고 단협규정 114조에 의한 보충협약으로 처리됩니다. 위원장과 사장이 위임한 교섭위원들이 노사협의회에서 교섭을 한 형태입니다. 절차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동서노조 규약 제19조2항에는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총회에서 의결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58조1항에서는 “임금 및 단체협약의 체결은 총회를 거쳐 위원장이 체결하고 교섭위원들이 연명으로 서명한다.”라고 되어 있다. 단협 제114조의 보충협약이 단체협약과

별개이기에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위원장의 궤변대로라면, 구조조정/정리해고/임금삭감 등 모든 사안에 대해 위원장이 보충협약으로 회사와 직권 조인할 수 있게 된다. 규약은 휴지 조각이 되고, ‘보충협약’은 노동조합 집행부의 도깨비 방망이가 되는 것이다. 지금 동서노조가 극구 부인하고 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 의결을 통해 ‘대학학자금’을 폐지하고, 이어서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경영평가 성과급 제외’가 또 다른 보충협약으로 합의될 가능성이 크다.

제 114 조 (보충협약)

- ① 조합과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유발생시 본 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도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법률의 개정 또는 중대한 노동환경변화가 발생한 경우
 2. 분할, 합병, 양도 등으로 근로조건 및 조합활동의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기타 노사가 합의하는 경우

발전노조에서 이같은 일이 있었다면 마땅히 현장으로부터 집행부 불신임 운동이 일어났을 것이다. 하지만 동서노조 내에서는 그러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집행부가 조합원을 두려워하지 않는 노동조합, 조합원이 집행부를 두려워하는 노동조합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 자문해본다!

<회의록에 관한 의혹 하나>

2014년도 2/4분기 노사협의회 회의록

1. 회의개요

- 일 시 : 2014. 6. 19(목) 14:00 ~ 6.20(금) 16:00,
6.20(금) 14:00 ~ 16:00
- 장 소 : 한국동서발전(주) 대회의실
- 안 건 : 현장직원 활선정보기 지급 등 30건

2. 회의결과 : 별첨

【사용자 위원】		【근로자 위원】	
의장 전략경영본부장 박현철	의장 수석부위원장 정영길		
위원 기획전략처장 이성렬	위원 정책부위원장 김준기		
위원 인재경영처장 강웅기	위원 본사지부장 김균한		
위원 발전처장 김창배	위원 당진지부장 김성관		
위원 안전품질실장 장석제	위원 울산지부장 진현주		
위원 업무지원팀장 조동준	위원 호남지부장 이이우		
위원 인사팀장 김인환	위원 동해지부장 필승현		
위원 재무예산팀장 조창섭	위원 일산지부장 정주필		
간사 노무복지팀장 남석열	간사 사무처장 백은상		

통상적으로 노사협의 회의록은 작성하여 쌍방이 검토하고 참석자들이 서명한다. 그런데 이번 동서노사협의회 회의록은 회의일시만 볼펜으로 쓰였다. 회의시작과 동시에 합의를 전제로 노사위원들의 서명부터 했을 개연성이 크다.